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연합 -

김정현

지역법제 연구 14-16-⑦-3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연합 –**

김 정 현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연합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ig Data
– European Union –**

**연구자 :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im, Jung-Hyun**

2014.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빅데이터의 활용은 산업진흥과 국가의 미래전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다양한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음.
- 반면에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음.
- 빅데이터 관련 법제는 데이터 개방과 관리에 관한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가 될 것임.
- 유럽연합의 경우 최근 빅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편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지침의 개정을 했다

II.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
- 2014년 출범하는 'EU 데이터 포털'에 유럽연합 관련 모든 공공 정보 · 데이터를 집중시키고 공개하는 EU 데이터 개방 전략

□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28개 모든 회원국을 포함하는 단일 감독기구 창립
-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보호의 수준제고에 대한 기업의 의무 강화

III. 기대효과

□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어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유럽연합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Utilization of big data has been the focus of a measure for industrial promotion and future strategy of the nation.
- Utilization of big data in various fields would enrich people's lives and suggest the new strategy for the nation's future.
- On the other hand, big data contain a risk of bringing negative imp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Big data related legislation would include the legislation for data openness with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Recently EU is actively opening data to build up an environment for big data utilization; meanwhile, EU has amended the guideline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I . Contents

- Big data utilization in EU
 - EU data opening strategy centralizes and discloses all EU public information and data to a 'EU data portal' established in 2014.
-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big data environment

- Establishment of a single organization governing all 28 member states
- Strengthening duty of corporations for enhancing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II. Expectation

- The research of EU's big data legislation will be a basis for our amendment of the related legisl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 Big data,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pen and Utilization of public data, EU

목 차

요약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 2 절 연구의 범위	13
제 2 장 빅데이터의 추진 및 관리체계	15
제 1 절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정책	15
I. 유럽연합의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 입장	15
II.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	15
제 2 절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리체계	17
I. Big Data Public Private Forum	17
II. 데이터 개방전략	18
제 3 장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제	21
제 1 절 빅데이터 규율을 위한 법제	21
제 2 절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제	23
I. 2003년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	24
II. 2013년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	25
III.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위원회 결정	30

제 3 절 규범력의 한계성과 회원국 협력의 필요성	31
제 4 장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33
제 1 절 유럽인권협약	33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34
I.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제정과정	34
II.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주요내용	35
III.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의 특징	61
제 5 장 결 론	65
I. 빅데이터 시대의 대비 필요성	65
II.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66
III.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	68
IV.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	70
참 고 문 헌	7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IT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데이터 관리방식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2020년에는 관리해야할 정보량이 50배 급증하고, 10배 많은 서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¹⁾ 데이터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에 정보로 포섭되지 못했던 사안들이 기술의 발달 덕분에 데이터화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및 접근방식을 요구하게 되었고, 빅데이터의 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5년 이내에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말미암아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시대는 예측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잠재적 가능성이 공존할 것이라고 한다.²⁾

빅데이터란 인터넷의 발달과 각종 전자매체의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데이터의 양·주기·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³⁾을 의미한다. 즉, 빅데이터는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매우 빨라짐에 따라 새로운 관리와 분석 방법이 요구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뜻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의미와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편),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4면.

2) 앞의 책, 13면.

3) 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3, 310면.

과거 빅데이터는 천문·항공·우주 정보, 인간체놈 정보 등 특수 분야에 한정됐으나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와 관계된 기술 및 도구(수집·저장·검색·공유·분석·시각화 등)도 빅데이터의 범주에 포함된다.⁴⁾ 즉,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인력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활용효과까지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와 달리 거대한 규모(Volume), 생성 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를 개념요소로 한다.⁵⁾⁶⁾ 이러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은 빅데이터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가치라고 본다. 과거의 방식과 다른 차원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으로 인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해진 데이터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주목하고, 기존의 기술력의 한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시하는 빅데이터의 활

4) 한국정보화진흥원(편), 앞의 책, 15면.

5) Mark A. Beyer/Douglas Laney, The Importance of ‘Big Data’: A Definition, Gartner, 2012. 6.

6)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 한국정보화진흥원(편), 앞의 책, 15면은 “거대한 규모(Volume)는 기술적인 발전과 IT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여 제타바이트(ZB) 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하고, 다양성(Variety) 증가는 로그기록, 소셜, 위치, 소비, 현실데이터 등 데이터 종류의 증가 및 텍스트 이외의 멀티미디어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의 다양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속도(Velocity) 증가는 사물정보(센서, 모니터링), 스트리밍 정보 등 실시간성 정보 증가, 실시간성으로 인한 데이터 생성, 이동(유통) 속도의 증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가치 있는 현재정보(실시간) 활용을 위해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속도가 중요해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복잡성(Complexity) 증가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데이터 저장방식의 차이, 중복성 문제 등, 데이터 종류의 확대, 외부 데이터의 활용으로 관리대상의 증가, 데이터 관리 및 처리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새로운 기법 요구“를 주요내용으로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용법위는 매우 다양하고,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범죄발생의 장소와 시간을 예측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최소화하고(사회 안전), 복지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서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국민복지).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국가 인프라), 다양한 경제관련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국가경제).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창업이 실패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산업지원), 기후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재난 대응).⁷⁾ 이처럼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의 요지이다.

이와 같은 접근의 입장선상에서 빅데이터의 변화와 발전을 IT와 비즈니스 영역에 새로운 공급과 수요를 창출하는 원동력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며, 이러한 입장은 결국 빅데이터의 시장가치의 증대를 중시하게 될 것으로 본다.

반면에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들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했던 개인정보유출사건들⁹⁾은 이와 같은 우려가 기우는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빅데이터는 개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금융·위치·의료·재산 등의 각종 정보를 포함하는데, 빅데이터의 활용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7) 정부부처합동,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 2012. 11. 28.

8) 한국정보화진흥원(편), 앞의 책, 18면.

9) 2014년 1월 카드회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KB국민카드 5,300만건, 롯데카드 2,600만건, NH농협카드 2,500만건 등 총 1억 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동년 3월 KT 홈페이지상 1,1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각종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

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 내용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반대측의 입장¹⁰⁾도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로 새롭게 출현한 정보환경 속에서 정보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정보통제권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 사회(다국적 기업 포함), 개인 간의 새로운 정보체계의 정립과 역할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정보주권¹¹⁾에 관한 논의들도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산업진흥과 국가의 미래전략의 수단으로 삼자는 입장과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상호충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과 법제 중 기술연구개발과 전문인력양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면, 빅데이터 공유활용 기반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제도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는 법제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빅데이터 관련 법제에서의 주된 논의는 데이터 개방과 관리에 관한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공공행정 영역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공공행정 영역에서의 관리 비용이 15~20% 정도의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 및 건강산업에서는 매년 약 3,300억 유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²⁾ 이러한 전망에 힘입어 유럽연합은 최근 빅데이터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4 의결 제16호(2014. 7. 30.)

11) 정보주권에 관한 최신의 논의로는 조소영, “정보주권의 의미와 내용”, 한국언론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정보주권과 데이터 국지화’, 2014. 11. 14.

12) McKinsey Global Institute,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2011.6, p.54.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해 기존의 1995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directive)을 2012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칙(Regulation)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규칙’은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할 수 있고, 모든 부분에 구속력을 갖지만, ‘지침’은 달성되어야 할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 회원국을 구속하나 회원국이 그 방식 및 수단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¹³⁾ 규칙과 지침이 효력상의 우열관계는 아니지만, 규칙을 채택하면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¹⁴⁾ 규칙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어 사실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지침을 규칙으로 바꾼 것이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규범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EU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가 향후 한국의 빅데이터 논의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기존 논의의 대부분은 빅데

13) 함인선,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33호, 2012, 30면. 이에 따르면, “EU법의 법원(존재형식)은 크게 제1차법(primary sources), 제2차법(secondary sources), 판례, 일반법원칙, 관습국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제1차법이며, 여기에는 다시 EU기초조약과 EU가 제3국이나 다른 국제조직 간에 체결한 조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제2차법은 제1차법으로부터 파생되는 법으로서, 파생법이라고도 하며, 또한 EU의 기관이 채택하는 조치라는 의미에서 EU법행위 또는 EU입법이라고도 한다. EU입법에는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및 의견(Opinion)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전3자(규칙, 지침, 결정)는 구속력이 있고, 후2자(권고, 의견)는 구속력이 없다. ‘규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그 모든 부분이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지침’은 달성되어야 할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방식 및 수단의 선택은 회원국 기관에 위임된다. ‘결정’은 그 모든 부분이 구속력을 가지며, 상대방을 특정한 결정은 상대방만을 구속한다. 이들 규칙, 지침과 결정 간의 효력의 우열은 없다.”고 한다.

14) 앞의 글, 31면.

이터의 현황과 정책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¹⁵⁾ 빅데이터의 기술적 영역에 방점을 둔 연구이다.¹⁶⁾ 빅데이터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고, 기술적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학·사회과학 등과의 학제간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본 연구는 빅데이터 관련 법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기로 하였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각종 정책과 법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반면에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법제도가 연구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빅데이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상표법·경쟁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이들 부분 역시 향후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법제에 관한 연구이므로 유럽연합의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제와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법령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연합의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빅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

15) 이러한 논의로 대표적인 것들은 배동민/박현수/오기환, “빅데이터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5권 10호, 2013. ; 빅데이터전략연구센터, “新 가치 창출을 위한 주요국의 빅데이터 추진 전략 분석”, IT & Future Strategy 제11호, 2012.

16)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재식,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3월호, 2013.

제 2 장 빅데이터의 추진 및 관리체계

제 1 절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정책

I. 유럽연합의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 입장

유럽연합과 미국은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빅데이터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추세라면, 유럽연합에서의 빅데이터 시장 형성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민간금융 영역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¹⁷⁾

그러나 유럽연합은 공공부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⁸⁾ 유럽연합은 2011년 12월에 지난 2003년 제정했던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the PSI Directive(Directive 2003/98/EC))’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¹⁹⁾

II.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

1. FuturICT 프로젝트

유럽연합은 FuturICT와 iKnow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고 이를 분석해 미래전략으로 삼고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종합연구개발 프로그램인 「EU Framework

17) 배동민/박현수/오기환, “빅데이터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5권 10호, 2013, 55면.

18) 앞의 글, 55면.

19) 앞의 글, 56면.

programme 7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FuturIC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접근방식을 지양하고자 했다. 보다 거시적이고, 통계에 의존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²⁰⁾ 이 프로젝트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회과학자와 이공계 계통의 학자들(공학자, 자연과학자, 물리학자 등)이 함께 협업하는 학제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²¹⁾

기존의 공학적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자는 데이터 처리방식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고, 이공계 학자들은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상호보완을 위한 모델을 통해 사회현상의 복잡성에 대한 규명을 데이터화하고자 한 것일 것이다.²²⁾

2. iKnow 프로젝트

또한 유럽연합은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테러 및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부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재난예측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를 위해 iKnow (interconnect Knowledg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는 미래전망·참여와 네트워크·전략과 정책결정의 3가지 영역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과 전 세계의 과학, 기술 및 혁신을 위한 잠재적 지식 및 이슈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³⁾

20) 송영조, 선진국의 데이터기반 국가미래전략 추진현황과 시사점, *IT & Future Strategy* 제2호, 2012, 26면.

21) 학제간 협력모델의 작동방식에 대해서는 앞의 글, 27면 참조.

22) FuturICT 모델의 플랫폼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앞의 글, 28면 참조.

23) 앞의 글, 29면.

3. DRIVER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유럽의 연구기관들의 데이터 저장시설을 연계해 유럽 디지털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는 종합분야 허브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DRIVER(Digital Repositories Infrastructure Vision for European Research)로 가시화하고 있다. DRIVER는 이학·공학·의학·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DRIVER에 속해 있는 기관간의 네트워크인 DRIVER Confederation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정식 국제기구로 승격시키려고 하고 있다.²⁴⁾

제 2 절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리체계

I . Big Data Public Private Forum

유럽연합은 「유럽 2020」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21세기 유럽의 사회적 시장과 경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경제 발전’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여²⁵⁾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규율을 본격화하고 있다.²⁶⁾

또한 빅데이터가 사회적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유럽위원회는 제7차 연구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로 불리는 연구개발조성프로그램에서 “Big Data Public Private Forum(BIG)”²⁷⁾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CSA(Coordination and Support Actions) 사업을 2012년 9월에 시작했다.²⁸⁾ BIG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발전을

24) 김용훈,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4, 12면.

25)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making-big-data-work-europe-0>(2014.6.14. 최종접속).

26) 김용훈, 앞의 글, 5면.

27) <http://www.big-project.eu/> (2014.10.1 최종접속)

28) CSA 사업은 기간 26개월, 예산총액 약 30.3억 유로(약 4조2,420억 원)(유럽위원회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빅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평가·분석하고, 산업분야별 이익에 근거해 관련 연구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BIG은 초기단계의 빅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키고, 법규상의 기존장벽을 해결하고자 하며, 유럽산업계에 빅데이터와 관련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한다.

BIG의 실시체계는 5개 산업별포럼(금융·보험, 의료, 제조·유통·에너지·운송, 공공분야, 통신·미디어·엔터테인먼트)²⁹⁾과 5개 기술별 워킹그룹³⁰⁾(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큐레이션³¹⁾, 데이터 저장, 데이터 용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산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파트너가³²⁾ 참여하고 있다.

II. 데이터 개방전략

또한 유럽연합은 2011년 12월 ‘데이터 개방전략(ODS: Open Data Strategy)’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까지 가능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안보·저작권·개인정보보호 등의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개인의 공공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데이터 개방전략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은 새로운 생산품과 서비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데이터 개방은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데이터 개방은 공공행정 영

부담 : 25억 유로; 3조 5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29) <http://www.big-project.eu/content/sector-forums> (2014.10.1 최종접속)

30) <http://www.big-project.eu/content/technical-groups> (2014.10.1 최종접속)

31) 데이터 선택, 유지관리, 조직화를 말한다.

32) <http://www.big-project.eu/partners> (2014.10.1 최종접속)에 따르면 참여단체는 AGT Group(R & D) GmbH, Atos Spain SA,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 Exalead, 아일랜드 국립대학, 보도협회, Siemens AG, STI International, The Open Knowledge Foundation Deutschland, 인스부르크 대학, 라이프치히 대학 등이 있다.

역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데이터는 ‘EU 데이터 포털’³³⁾에 집대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고, 상세한 내용은 이하의 제3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3) <https://open-data.europa.eu/en/data/>

제 3 장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제

제 1 절 빅데이터 규율을 위한 법제

유럽연합은 빅데이터를 인적 자원 및 재정적 자원과 같은 전통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자산(a key asset)으로 보고 있다. 빅데이터는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기후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 인공위성 · 이미지 · 디지털 사진 및 동영상 · 교통정보 · GPS신호 등 각종 기기와 기술에 의해서도 생산된다.³⁴⁾ 이처럼 각양각색의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 개방이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데이터 개방전략(ODS: Open Data Strategy)’ 차원에서 2011년 12월 유럽연합기구와 27개 회원국이 생산하는 모든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사용자들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3년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3/ 98/EC)’을 ‘2013년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2013/37/EU)’으로 개정했다.³⁵⁾

개정 지침에 따르면 ‘EU 데이터 포털’이 출범할 때까지 EU 내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27개 회원국의 부처, 공립대학, 도서관, 박물관 등은 문서자료, 지도 등의 공간정보 자료, 이미지, 동영상, 웹 애플리케이션 등의 공공데이터를 온라인에 게재해야 한다.³⁶⁾ 또한 개인과 기업은 공공데이터를 얼마든지 재가공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³⁷⁾

34)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making-big-data-work-europe-0>(2014.9.30 최종접속)

35) NEM, “Big and Open data Position Paper”, NETWORKED & ELECTRONIC MEDIA, 2013. 12, p. 14.

36) 김한나, “빅데이터의 동향 및 시사점”, 방송통신정책, 제24권 19호, 2012 , 54면.

37) 매일경제, “EU 공공정보 공개 61조원 시장 만든다”, 2011.12.13일자에 따르면 유

제 3 장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제

2013년 지침은 2014년 출범한 ‘EU 데이터 포털’에 EU 관련 모든 공공정보 · 데이터를 집중시키고 공개하는 EU 데이터 개방 전략에 따라 개정되었다. ‘EU 데이터 포털’에는 200개 이상의 지역 · 국가의 오픈 데이터 카탈로그가³⁸⁾ 연계될 예정이다.³⁹⁾ 유럽연합 집행위는 데이터 개방 정책을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지침은 개인과 기업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정보재가공산업을 발전시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표 1> 유럽연합의 공공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⁴⁰⁾

구 분	내 용
공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정보 데이터 온라인 게재의무화· 개인 · 기업 정보 재가공 후 판매허용· 정보 공개여부 모니터링할 감시기구 설치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공공기관, 27개 회원국 부처, 공립대학,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 등
대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자료, 통계수치, 지도, 지질학적 자료, 그래픽, 동영상 등
발효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2012년 봄 EU데이터 포털 출범)
발효효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통해 연 400억 유로 생산 유발

럽연합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가공산업이 발전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증가해 연간 400억 유로에 이르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8) <http://open-data.europa.eu/>

39) NEM, “Big and Open data Position Paper”, NETWORKED & ELECTRONIC MEDIA, 2013. 12, p. 14.

40) 매일경제, “EU 공공정보 공개 61조원 시장 만든다”, 2011.12.13일자.

제 2 절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제

유럽연합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제는 2003년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⁴¹⁾과 이를 개정한 2013년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⁴²⁾이 있다. 개정된 지침은 2013년 4월 10일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EU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 및 유럽이사회(Europe anCouncil)의 승인을 거쳐 2013년 6월 13일 유럽의회 표결로 공식 확정되었다.⁴³⁾ 동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과 재이용을 위한 ‘ePSIplatform’⁴⁴⁾ 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전략제시와 다양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⁴⁵⁾

지침은 규칙과 달리 정책 목표와 시한, 방법 등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규율해 이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회원국들의 참여를 확대해 가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1)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f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원문은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making-big-data-work-europe-0>

42)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원문은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making-big-data-work-europe-0>

43) 한국정보화진흥원, IT Issues Weekly , 2013. 6. 20., 1면.

44) <http://www.epsiplatform.eu/>

45) 배성훈 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6권 제3호, 2013, 71면.

I. 2003년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

2003년 12월 발효되었던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을 규율하고 있는 이 지침은 유럽 내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규율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투명성(transparency)과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을 양대축으로 하며, 시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정보 재사용의 경제성에 더 초점을 두었었다. 또한 이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공공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을 요구했다. 다만, 문서, 데이터베이스, 오디오 파일, 영상 등의 재사용은 가능하도록 했지만, 교육·과학·방송·문화 영역의 정보의 재사용은 불가능하도록 해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차등을 두었다.⁴⁶⁾

또한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기반해 비용을 부과도록 해 정보 재사용의 어려움을 제거하고자 했고, 배타적 계약 체결을 금지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타적 계약의 체결이 가능했다.

그리고 재사용을 위한 비용과 기타 요건은 사전에 정한 후 공지해야 하고, 재사용을 위해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거부사유와 구제수단을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인의 공공데이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뿐,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규율한 것은 아니었다.

46) 김용훈, 앞의 글, 6면.

2. 회원국의 재량 인정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규율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지침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동 지침의 실제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참여와 협조가 없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원국의 재량이 인정되었고, 유럽연합은 회원국들과 기관의 참여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했다.⁴⁷⁾

II. 2013년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

1. 제정 취지

2003년 11월 17일의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의해 발의된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2003/98/EC)은 공공데이터 재사용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규정들과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초석을 다쳤다고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재활용은 개인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정보재가공 산업의 융성으로 이어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사회활동을 촉진했다.

2003년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나, 이후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가공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개발하는 기술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2003년 지침은 과거의 규율방식을 답습하고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규율하기에 부족한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이 제공하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놓치기에 이르렀다.⁴⁸⁾

4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30/39(2011.12.14.).

48)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L 175/1.

제 3 장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제

또한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공공기관 간의 서로 다른 규정과 관행은 세계적 추세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해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면, 공공분야에서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고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집된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최종 소비자 포함)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사용자, 공공기관, 사회 전부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기대하에 지침을 채택했다.

2003년 지침 제정 이후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수집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분석 · 활용 · 처리에 있어서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러한 상황을 기준의 2003년 지침으로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 해져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 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들은 상이한 법규범을 제정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의 장애를 방지하고 공공데이터가 유럽 전 지역에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아 2013년 지침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2. 정보의 재사용 허가 의무

2003년 지침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의 재사용을 허가하는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결국 재사용 여부는 회원국들이나 각 공공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었다. 따라서 회원국에 따라 재사용의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재사용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회원국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이 가능하나, 재사용의 권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원국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이 쉽지 않았다. 이는 유럽연합 내의 법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정보의 재사용을 허가하는 회원국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3년 지침은 이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3. 개인정보보호

2013년 지침은 기존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지침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⁴⁹⁾과 상충하지 않도록 2013년 지침을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지침에 따른 조치도 기본권을 준수해야 하며, 지침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수집당시 명백하게 지정된 합법적인 목적 외로 수집되거나 가공되어서는 안 된다.

4.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에 따라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정보는 본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만약 제3자가 도서관(대학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를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최초 소유자이고 그 권리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제3자가 갖는다.

5. 문화유산에서의 적용범위 확대

본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학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를 포함한 도서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는 상당한 양

49) Directive 96/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의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데이터의 디지털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 디지털 공유 자료의 양은 매우 증가했다.

이러한 문화유산 정보와 관련 있는 빅데이터는 디지털 컨텐츠 제품과 서비스의 잠재적 기반이 되고, 학습과 관광 부문에 있어서 혁신적으로 재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이를 개발할 경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미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는 지속적으로 디지털화에 투자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상당수가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다수의 그들 기관들은 자신들의 컨텐츠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적용범위 확대는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의 세 가지 유형의 문화 시설에 제한되어야 한다. 문화시설에 따라 규제방식과 환경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문화시설의 정보는 모바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사용되면서 점점 더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극장 등과 같은 문화 시설과 공연예술을 지향하고, 이들 시설의 정보의 지적소유권은 제3자에게 속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

또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때에는 회원국들의 개별 법규법 및 관행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6. 비 용

비용의 경우에도 실비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도록 비용의 상한선을 지침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회원국은 보다 적은 비용을 부과하거나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여 정보 재사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관소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실비 이상의 요금부과가 가능하며,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 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7. 구제 수단

2013년 지침은 공정한 심사기구의 심사를 보장해 구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심사기구는 개별국가의 사법기관 또는 독립적인 기관이 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회원국의 헌법과 법률상 제도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을 신청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하여 잘못 통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구제 수단은 재심사의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8. 적용의 한계

본 지침은 유럽연합헌장 제8조 개인정보보호와 제17조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지침의 내용이 유럽인권보호조약 및 개인의 기본권과 배치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침에 따르더라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개별국가의 법규범에 따라 보장받는 경제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 및 각종 권리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9. 적용의 보충성

본 지침은 회원국 내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각 회원국의 사정을 고려하고, 융통성 있는 정보통제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결국 유럽연합에서의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규제라기보다는 회원국에게 우선적인 재량권을 인정한 후 보충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⁰⁾

특히 데이터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비용부과에 있어 일관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조력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⁵¹⁾ 이러한 보충적 규율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²⁾

III.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위원회 결정

공공분야의 정보는 혁신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의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의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공공분야의 정보 재사용을 강조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⁵³⁾

동 결정은 위원회뿐만 다른 기관들도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동 결정은 정보의 광범위한 확산과 활용을 유도할 수 있고, 제도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들과 위원회 서비스 기관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⁵⁴⁾

50) 김용훈, 앞의 글, 9면.

5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75/5(2013.6.27.).

52) 김용훈, 앞의 글, 9면.

53) COMMISSION DECISION of 12 December 2011 on the reuse of commission documents(2011/833/EU). 원문은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making-big-data-work-europe-0> (2014.9.1 최종접속)

5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30/39(2011.12.14.).

1. 기본 원칙

당해 결정은 공동체 기관과 기구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의 경우 관련규칙⁵⁵⁾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데이터 포털의 구축

위원회는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정보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포털(Data Portal)을 구축하여야 하고, 다른 연합 기관, 기구, 사무소 그리고 단체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제수단

정보 재사용을 위한 신청이 거부된 경우 위원회 서비스국과 출판부는 신청인에게 유럽기능조약 제263조와 제228조에 따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소를 제기하거나 유럽 옴브즈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⁵⁶⁾

제 3 절 규범력의 한계성과 회원국 협력의 필요성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은 ‘지침’의 특성상 회원국들에 대한 구속력은 있되, 회원국이 구체적인 방식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기 때

55) Regulation (EC) No 45/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0.

56) 김용훈, 앞의 글, 10면.

제 3 장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제

문에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적인 법제도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결국 위에 설명한 지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강제적인 집행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유럽연합으로서는 회원국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연합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대한 결정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 4 장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제 1 절 유럽인권협약

유럽평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인권협약을 제정하고 유럽인권법원 등을 설치하는 등 유럽수준에서 사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인권보호는 유럽연합보다는 유럽평의회와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기원은 경제적인 통합이었지만⁵⁷⁾ 유럽평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고 난 후 인권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출범한 협의체이기 때문이다.⁵⁸⁾

현재까지 유럽의 인권보호를 위한 주요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은 유럽평의회가 만들었고, 개인정보 역시 유럽인권협약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협약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가정생활, 주거 그리고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2) 당해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공권력(public authority)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 다만, 국가 안보, 사회 안전 혹은 국가의 경제적 공공복리에 기반하여 나아가 무질서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그리고 건강과 공중도덕을 위하여 혹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하여 민주사회에서는 당해 권리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⁵⁹⁾

57) 박덕영 외, EU법 강의, 박영사, 2013, 5면.

58) 김용훈, 앞의 글, 13면.

59) 앞의 글, 13면.

한편 유럽연합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95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의 제정과 이후 2012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칙 제정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I.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제정과정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⁶⁰⁾은 비록 ‘지침’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유럽연합차원의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현실을 반영해 제정한 것이 1995년 지침이었다.⁶¹⁾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공유와 수집의 양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하고 통일적인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⁶²⁾

유럽의회는 2014년 3월 12일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칙(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해 유럽의회 의원 참석자 중 621인이 찬성(반대 10, 기권 22)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유럽의회를 통과하였다.⁶³⁾ 이 법안은 유럽연합이 지난 1995년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60)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61) 함인선,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33호, 2012, 8면.

62) 앞의 글, 8면.

63) <http://www.itworld.co.kr/news/86543> <2014.7.3.>

II.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주요내용

1. 체 계

2012년 규칙안은 전 11장 91조의 상당히 방대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5년 지침에 비하여 그 내용과 효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주제 및 목표), 제2-3조(범위), 제4조(정의)
제2장 원칙: 제5조-제10조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원칙 등,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11조-21조 액세스권, 잊혀질 권리 등
제4장 관리자 및 처리자: 22조-39조
제5장 제3국 또는 국제 기구로의 개인 정보 전송: 40조-45조
제6장 독립 감독기관: 46조-54조
제7장 협력 및 일관성: 55조-72조
제8장 구제 수단, 책임 및 제재: 73조-79조
제9장 특정 정보 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 80조-86조
제10장 위임 행사: 87조-91조

이하에서 2012년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목 적

본 규칙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에 결부된 이유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2012년 규칙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⁶⁴⁾

64) 함인선, 앞의 글, 11면.

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와 관련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특정되고, 명확하며,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개인정보는 적정하고 타당하며, 처리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고, 정확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정확한 개인정보는 그 정보의 처리목적을 고려하여 자체 없이 삭제나 정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에서 합법적이다.

이들 원칙은 1995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새롭게 추가된 것은 투명성원칙과 정보수집최소화원칙을 명확히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⁶⁵⁾

또한 개인정보 처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적법해야 한다. (a) 정보주체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특정 목적을 위해 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b)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정보주체의 청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 (c) 관리자가 대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 (d) 정보주체의 핵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 (e) 공익에 따라 이행되는 업무의 성취를 위하여, 또는 관리자에게 부여된 공식적인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가 필요하다. (f) 관리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가 상기

65) 함인선, 앞의 글, 12면.

이익보다 중요한 경우(특히 정보주체가 아동인 경우)를 예외로 한다. 이것은 고유의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처리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제83조에서 언급된 조건과 보호수단이 합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제6조).

3.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성

관리자는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보주체가 동의하였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사안에 관련되는 서면 신고와 같은 맥락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동의 요건은 외형상 언급된 다른 사안과 구별 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동의 철회는 정보주체의 철회가 있기 전에 동의에 기초하여 실행된 처리의 적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보주체와 관리자의 입장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동의는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7조).

4. 아동의 개인정보의 처리

아동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정보 사회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13세 이하 아동의 개인 정보 처리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인이 허가를 부여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실행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관리자는 이용 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여 입증할 수 있는 허가를 얻기 위해 적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제8조).

5. 개인정보처리가 금지되는 영역

인종이나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나 신념, 조합원 자격을 드러내는 개인정보의 처리, 유전정보, 건강, 성생활 또는 형사판결이나 관련 보

안조치에 관한 정보의 처리는 금지된다(제9조).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⁶⁶⁾

6. 정보주체의 권리

(1) 투명성

관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관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적합한 분명하고, 평이한 용어를 이용하여 이해 가능한 양식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와 연락 사항(특히 아동에게 전달되는 정보)을 제공해야 한다(제11조).

(2)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의 절차

관리자는 일정한 정보의 제공과 법정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관한 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특히 일정한 조치의 요청을 축진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자동화 수단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관리자는 일정한 조치의 요청도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관리자는 요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그 조치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보주체가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 달리 요청한 바가 없다면, 그 통지 또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거부의 이유와 감독기관에의 이의 제기 및 사법기관에의 권리구제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요청에 따른 통지와 조치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요청이 명백히 과도한 경우, 특

66) 함인선, 앞의 글, 13면.

히 반복된 경우에, 관리자는 통지 또는 요청에 따른 조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요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이 명백히 과도하다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자가 부담한다(제12조).

(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관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관리자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 관리자의 대리인과 정보 보호 담당자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해당되는 경우) (b) 개인정보가 지정된 처리 목적. (c) 개인정보가 보관되는 기간 (d)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관리자에 요청하거나 상기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존재함 (e) 감독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와 감독기관의 연락처 정보 (f) 개인정보의 수령인 또는 수령인 범주 (g)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는 제3자 또는 국제기구에 전송하려고 하며, 위원단의 적합성 판정을 참조하여 상기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으로 보호됨 (h) 개인정보가 수집된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관리자는 위의 정보에 더하여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적 또는 자발적인지의 여부와 상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위의 정보 이외에 개인정보가 비롯된 출처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획득된 당시 (b)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

정보가 수집되거나 처리되는 특정 상황을 참작하여 기록되는 당시 또는 수집된 후 적정한 기간 이내 개인정보가 다른 수령인에게 공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최소한 정보가 처음 공개되는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내용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a) 정보주체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정보를 이미 갖고 있다. (b) 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았고, 상기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과도한 노력을 수반한다. (c) 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았고, 기록 또는 공개가 법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d) 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았고, 제21조에 따라 연합법 또는 회원국 법률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정보의 제공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제14조).

(4) 액세스권

정보주체는 언제라도 요청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처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관리자로부터 확인받을 권리를 갖는다. 상기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관리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처리 목적 (b) 관계되는 개인정보의 범주 (c) 개인정보가 공개될 예정이거나 이미 공개된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주(특히 제3국에 소재한 수령인의 경우) (d) 개인정보가 보관되는 기간 (e)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관리자에게 청구하거나 상기 개인정보의 처리를 반대할 권리의 존재 (f) 감독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와 감독기관의 연락처 정보 (g) 처리 중인 개인정보의 통지, 상기 개인정보의 출처에 관한 유효한 정보의 통지 (h) 상기 처리의 중요성 및 예상되는 결과(제15조)

(5) 정정권

정보주체는 관리자로부터 부정확한 사항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정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정보주체는 수정 진술을 보충하는 등 불완

전한 개인정보의 완료된 상태를 획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16조).

(6) 잊혀질 권리와 삭제권

정보주체는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특히 정보주체가 아동기에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관리자로부터 해당 내용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와 추가 유포 방지 확보 권리를 가져야 한다. (a) 정보가 수집되거나 처리된 목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b) 정보주체가 제6조 (1)의 (a)에 따라 처리를 기초로 하는 허가를 취소한다. 또는 허가된 보관기간이 만료하고, 더 이상 정보 처리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 (c) 정보주체가 제19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반대한다. (d) 정보 처리가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상기 관리자는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가 상기 개인정보에 연결되는 링크, 또는 상기 개인정보의 복사물 내지 복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리기 위해 그가 책임지는 공개용 정보와 관련한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공개를 허가한 경우 관리자는 상기 공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자체 없이 삭제를 이행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유를 필요로 하는 범위를 제외한다. (a)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경우 (b) 따른 공중보건 부문의 공익을 이유로 함 (c)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경우 (d) 유럽연합법 또는 회원국 법률에 의해 관리자가 주체인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르기 위한 경우. 단, 회원국 법률은 공익 목적을 충족하고, 개인정보 보호권의 본질을 존중하고,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어울려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 삭제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해야 한다. (a) 관리자가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b) 관리자가 증빙 목적을 위해 유지하는 외에 업무 완수를 위해서는 더 이상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c) 처리가 불법적이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에 반대하고, 대신에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요청한다. (d) 정보주체가 제18조 (2)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른 자동화 처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한다.

(7) 정보 이동권

개인정보가 전자적 수단과 구조화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포맷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정보주체에 의한 사용이 허용되는 그러한 정보를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8) 이의권

정보주체는 각자의 특수 상황에 관한 이유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언제라도 이의를 주장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우선하는 납득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입증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개인정보가 직접 마케팅 용도로 처리되는 경우 정보주체는 상기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이의를 주장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권리 는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주체에게 분명하게 제공되고, 다른 정보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관리자는 더 이상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제19조).

(9) 권리의 제한

유럽연합법 또는 회원국 법률은 입법 조치를 통해 의무와 권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상기 제한이 다음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균형 잡힌 조치를 구성하는 경우여야 한다. (a) 안보 (b) 범죄의 예방, 조사, 탐지 및 기소 (c) 특히 연합 또는 회원국의 중요한 경제적 내지 재정적 이익에 중점을 두며, 통화, 예산 및 조세 사항과 시장 안정 및 무결 상태의 보호를 포함하는 연합 또는 회원국의 기타 공익 (d) 규제된 직종에 대한 윤리 위반의 예방, 조사, 탐지 및 기소 (e) 전술한 (a), (b), (c) 및 (d)에서 언급된 경우에 직무 권한의 행사와 관련되는 감시, 조사 또는 규제 기능. 상기 직무 권한이 때때로 행사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경우 (f) 정보주체의 보호, 또는 다른 자의 권리 및 자유 보호

7. 관리자

(1) 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개인정보 처리가 본 규칙에 따라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사실이 입증 가능하도록 정책을 채택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a) 기록의 보관 (b) 정보 보안 요건의 시행 (c) 정보 보호 영향 평가의 수행 (d) 감독기관의 사전 허가 또는 사전 협의에 관한 요건 준수 (e) 정보 보호 담당자의 지정(제22조)

(2) 처리자

관리자를 대신하여 처리 작업이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 관리자는 처리가 본 규칙의 요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기술적 · 구조적 조치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 처리자를 선발하고, 특히 이행될 처리에 적용되는 기술 보안 조치 및 구조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고, 상기 조치가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처리자에 의한 처리 이행에는 처리자를 관리자에게 구속시키고, 처리자가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계약 또는 기타 법률행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a)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경우 오로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b) 비밀유지를 약속하였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직원만을 고용한다. (c)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d) 관리자의 허가가 있기 전에만 다른 처리자를 참가시킨다. (e) 주어진 처리의 성질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에 대응하는 관리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 구조적 요건을 관리자와 합의하여 마련한다. (f)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자를 지원한다. (g)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 모든 결과물을 관리자에게 인계하고, 별도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h) 관리자와 감독기관이 본조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감독기관과의 협력

관리자와 처리자(해당되는 경우 관리자의 대리인이 포함됨)는 요청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을 허용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감독기관에게 협조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권한 행사에 응하여 관리자와 처리자는 감독기관이 명시하는 적정 기간 내에 감독기관에게 회답해야 한다. 상기 회답에는 감독기관의 견해에 응하여 취해진 조치와 달성된 결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9조).

(4) 정보보안

관리자와 처리자는 기술 상태와 시행 비용을 고려하여 처리에 의해 나타난 위험과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성질에 알맞은 보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 구조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관리자와 처리자는 위험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괴나 사고 손실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특히 개인정보의 무단 공개, 유포 내지 접근, 또는 변경과 같은 불법적인 처리 방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0조).

(5) 감독기관 및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침해 통지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면 과도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감독기관에 전술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가 24시간 이내에 실행되지 않는 경우 상기 통지에는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첨부되어야 한다(제31조).

개인정보 침해가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관리자는 제31조에서 언급된 통지를 이행한 후 과도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제32조).

8. 정보보호 영향평가

처리 작업이 고유의 성질, 범위 또는 목적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에 특정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관리자를 대행하는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구상 중에 있는 처리 작업에 대해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정한 위험을 다음을 의미한다. (a) 자연인에 관한 개인적인 측면을 살펴보거나 자연인의 경제 상황, 소재지, 건강, 취향, 신뢰도 또는 행동 양식을 분석 내지 예측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평가. 상기 평가는 자동 처리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개인에 대해 법적 효과를 초래하거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기초된다. (b) 성생활, 건강, 인종, 인종적 기원 등에 관하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 역학 조사, 또는 정신 질환 내지 감염 질환 조사 등에 관한 정보. 상기 정보는 대대적으로 특정 개인에 관한 조치 혹은 결정을 취하기 위해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 이용된다. (c) 공공연하게 접근 가능한 부문의 감시. 특히 전자 광학 장치(비디오 감시)가 대대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d) 아동에 관한 대규모 파일링 시스템에 포함된 개인정보, 유전자 정보, 또는 생체 정보 (d) 감독기관의 조회(consultation)가 요구되는 다른 처리작용

평가에는 정보주체와 기타 관계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구상 중에 있는 처리 작업,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에 관한 위험 평가, 위험을 다루기 위해 구상 중에 있는 조치, 안전 조치, 보안 조치,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고, 본 규칙이 준수됨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3조).

9. 정보보호담당자

(1) 지 정

관리자와 처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a)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구에 의해 처리가 이행된다. (b) 25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한 기업에 의해 처리가 이행된다. (c)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핵심 활동은 고유의 성질, 범위 및/또는 목적으로 인해 정보주체를 정기적, 체계적으로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처리 작업을 구성한다(제35조).

(2) 지 위

관리자 또는 처리자는 정보 보호 담당자가 적시에 적절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모든 사안에 관여함을 보장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처리자는 정보 보호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의무와 직무를 수행하고, 해당 직책의 수행에 관하여 지시를 받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정보 보호 담당자는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처리자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원하고, 직원, 부지, 설비 및 제37에서 언급된 의무와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제36조).

(3) 직무

관리자 또는 처리자는 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직무를 위임해야 한다. (a) 본 규칙에 따라 관리자 또는 처리자에게 의무에 대해 통지, 권고하고, 이 활동과 수취된 반응에 대해 기록한다. (b) 책임 할당, 처리 작업에 관련된 직원의 교육, 관련 회계감사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정책이 시행, 적용되는 과정을 감시한다. (c) 특히 정보 보호 친화적인 설계, 정보 보호 친화적인 설정 및 정보 보안에 관련된 요건과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 및 본 규칙에 따라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요청에 관련된 요건에 대해 본 규칙이 시행, 적용되는 과정을 감시한다. (d) 기록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다. (e)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기록, 통지 및 정보를 감시한다. (f)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실시한 정보 보호 영향 평가의 실적과 사전 허가 또는 사전 협의 신청을 감시한다. (g) 정보 보호 담당자가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력하거나 솔선하여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감독기관의 요청에 대한 대응을 감시한다. (h) 처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감독기관의 접촉점으로 활동하고,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감독기관과 협의한다(제37조).

1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제3국 및 국제 기구와 관련하여 위원단과 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국제협력 체제를 개발한다. (b) 개인정보와 기타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에 따라 통지, 항의 위탁, 조사 지원 및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에 국제 상호 원조를 제공한다. (c)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집행에 국제 협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토론과 활동에 관련 당사자가 집중하게 한다. (d)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관행의 교류와 문서화를 촉진한다.

11. 감독기관

(1) 설립

정보 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연합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공공기관이 본 규칙의 적용 상태를 감시하고, 연합 내에서 본 규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감독기관은 서로간에 협조하고, 위원단과 협력해야 한다.

회원국에 감독기관이 한 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회원국은 감독기관들이 유럽정보보호위원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단독 접촉점으로 기능하는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제57조에서 언급된 일관성 기제에 관한 규칙을 기타 기관이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제46조).

각 회원국은 본 규칙의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a) 감독기관의 설립과 지위 (b) 감독기관 구성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험 및 기량 (c) 감독기관 구성원의 지명에 관한 원칙 및 절차, 직무와 겸임할 수 없는 활동 또는 업무에 관한 원칙 (d) 본 규칙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지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4년으로 정해져야 하는 감독기관 구성원의 임기기간. 시차 임명 절차를 이용하여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기 기간의 일부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실행될 수 있다. (e) 감독기관 구성원이 재임용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의 여부 (f) 감독기관의 구성원과 간부의 직무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과 일반조건 (g) 감독기관 구성원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조건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않거나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비롯한 감독기관 구성원의 직무 종료에 관한 원칙 및 절차

(2) 독립성

감독기관은 부여받은 의무와 권한의 수행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감독기관의 구성원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 감독기관의 구성원은 고유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자제하고, 이익 유무에 상관없이 재직 중에 겸직할 수 없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감독기관의 구성원은 임기가 종료한 이후에 직책 및 이의의 승인에 대해 진실성과 신중함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유럽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상호 원조, 협력 및 참여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의무와 권한을 비롯한 감독기관의 의무와 권한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인력, 기술 지원, 재원, 부지 및 기반 시설을 감독기관이 제공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감독기관이 감독기관 책임자의 지시로 지명되고, 상기 지시에 따르는 간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원국은 감독기관이 고유의 독립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무통제를 적용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원국은 감독기관이 별도의 연간 예산을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상기 예산은 공표되어야 한다(제47조).

(3) 직무상의 비밀

감독기관의 구성원과 간부는 임기 동안은 물론 임기 이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비밀 정보에 대해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야 한다(제48조).

(4) 권한 및 직무

각 감독기관은 본 규칙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이 속한 회원국의 지역에서 행사해야 한다. 연합에서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시설 활동에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시작되고,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1개 이상의 회원국에 임명되는 경우 관리자 또는 처리자의 주요 시설에 설치된 감독기관은 본 규칙의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모든 회원국의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수행하는 처리 활동을 감독할 권한을 갖춰야 한다. 감독기관은 재판상의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는 법원의 처리 작업을 감독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제50조).

감독기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 본 규칙의 적용성을 감시, 보장한다. (b) 특히 추가 조사 또는 다른 감독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정보주체 또는 제73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제기한 불만을 경청하고, 적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 문제를 조사하고, 적정 기간 내에 불만 사항의 추이와 결과에 대해 정보주체 또는 상기 단체에게 통지한다. (c) 다른 감독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원조를 제공하며, 본 규칙의 적용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d) 정보주체가 적정 기간 내에 조사 결과에 대해 본 감독기관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 자체적인 계획에 의하거나, 불만 사항에 근거하거나, 또는 다른 감독 기관의 요청에 의해 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e) 관계되는 발달 상황(특히 정보 및 통신 기술과 상업적 관행의 발달)을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추적 관찰한다. (f)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관한 입법 및 행정 조치에 대해 회원국의 학회와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는다. (g) 처리 작업을 허가하고, 상기 허가에 대해 협의한다. (h) 행동 강령 초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i) 구속력 있는 회사 규칙을 승인한다. (j)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각 감독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험, 원칙, 안전 조치 및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특히 아동에게 초점이 맞춰진 활동은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 감독기관은 요청이 있으면 본 규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에게 조언하고, 적절한 경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의 감독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제51조).

각 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a)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조항의 위반 혐의에 대해 관리자 또는 처리자에게 통지한다. 적합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특정한 방식으로 위반 사항을 복구하도록 관리자 또는 통지자에게 지시한다. (b) 관리자 또는 처리자에게 본 규칙에 의해 제공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르도록 지시한다. (c) 관리자 또는 처리자(해당되는 경우 대리인 포함)에게 각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한다. (d) 제34조에서 언급된 사전 허가와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을 보장한다. (e) 관리자 또는 처리자에게 경고 혹은 훈계한다. (f) 정보가 본 규칙의 조항을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 해당되는 모든 정보를 수정, 삭제 또는 폐기하고, 상기 정보가 공개된 제3자에게 전술한 조치에 대해 통지하도록 지시한다. (g) 일시적 또는 최종적인 처리 금지를 시행한다. (h) 제3국 또는 국제 기구에 소재한 수령인에게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을 중단한다. (i)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 견해를 내놓는다. (j) 국회, 정보, 또는 기타 정치 단체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통지한다.

각 감독기관은 관리자 또는 처리자로부터 다음을 확보할 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a)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개인 자료와 정보에 접근할 권리 (b) 본 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수행되고 있음을 추정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 처리 설비와 도구를 포함한 부지에 접근할 권리(제53조)

(5) 기관간의 협력

감독기관들은 일관된 방법으로 본 규칙을 시행, 적용하기 위해 관련 정보와 상호원조를 서로 제공하고, 서로간에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여러 회원국의 정보주체가 처리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상호원조는 정보 요청과 감독 조치(예: 사례 공개와 개발 지속에 관한 사전 허가, 사전 협의, 조사 및 신속한 정보를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각 감독기관은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자체 없이 다른 감독 기관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기 조치에는 본 규칙에 상반되는 처리 작업의 중지 또는 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조사 혹은 집행 조치 과정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전송이 포함될 수 있다.

지원 요청에는 요청 목적과 요청 이유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환된 정보는 요청된 사안에 관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지원 요청이 처리된 감독기관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청에 따를 것을 거부할 수 없다. (a) 감독기관은 요청 사항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b) 요청에 따르는 것이 본 규칙 조항과 양립하지 못한다.

피청구 감독기관은 청구 감독기관에게 결과에 대해 통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진행 상황 또는 청구 감독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취해진 조치에 대해 통지한다.

감독기관은 다른 감독기관이 전자 수단으로 요청한 정보를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표준화된 구성방식을 이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상호 원조 요청이 있은 다음에 취해진 조치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어 서는 안 된다(제55조)

협력과 상호 원조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기관들은 공동 조사업무, 공동 집행조치 및 기타 공동 작업을 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른 회원국의 감독기관에서 파견된 지정 구성원 내지 간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 회원국의 정보주체가 처리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각 회원국의 감독기관은 공동 조사작업 또는 공동 작업에 적절히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관할 감독기관은 각 회원국의 감독기관이 각각의 공동 조사작업 또는 공동 작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상기 작업에 참여하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자체 없이 대응해야 한다.

각 감독기관은 주관 감독기관으로서 각자의 국내법에 따르고, 후원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 집행권(공동 작업에 관여된 후원 감독기관의 구성원 혹은 간부에 대한 조사 업무를 포함함)을 부여하거나 주관 감독기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후원 감독기관의 구성원 혹은 간부가 후원 감독기관의 법률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상기 집행권은 지침에 따르는 경우에만 대체로 주관 감독기관의 구성원 혹은 간부가 있는 데서 행사될 수 있다. 후원 감독기관의 구성원 혹은 간부는 주관 감독기관의 국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주관 감독기관은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감독기관은 특정한 협력 활동의 실질적인 측면을 규정해야 한다(제56조).

12. 유럽정보보호위원회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본 규칙에 따라 설립된다.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소속된 감독기관 1개의 책임자와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원국에서 1개 이상의 감독기관이 본 규칙에 따른 규정의 적용 상태에 대한 감시를 책임지는 경우 상기 감독기관들은 공동 대표로서 활동할 책임자를 지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과 모임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대표를 지명해야 한다. 유럽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자체 없이 위원단에 통지해야 한다(제64조).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위원단의 요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고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누구에게서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제65조).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본 규칙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획 또는 위원단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 본 규칙에 대해 제안된 개정안을 포함하여 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위원단에 권고한다. (b) 자발적인 결단에 따르거나, 소속 구성원 중 1인의 요청 또는 위원단의 요청에 따라 본 규칙의 적용성이 포괄된 문제를 심사하고, 본 규칙의 일관된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감독기관에 건의되는 지침, 권고 및 우수 관행을 공표한다. (c) (b)에서 언급된 지침, 권고 및 우수 관행의 실질적인 적용 상태를 점검하고, 이들에 대해 위원단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d) 제57조에서 언급된 일관성 기제에 따라 감독기관의 결정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e) 감독기관들간의 협력과 함께 정보 및 실무의 효과적인 쌍방간, 다자간 교환을 촉진한다. (f)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감독기관들 사이의 직원 교환은 물론 해당되는 경우 제3국의 감독기관 또는 국제 기구와의 직원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g) 정보 보호 입법에 관한 정보와 문서의 교환을 촉진하고, 전 세계에 분포한 정보 보호 감독기관과 함께 실행한다.

위원회가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단은 해당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유럽정보보호위원회가 상기 조언을 제시해야 하는 기간 내에서 제한 시간을 제시할 수 있다.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그의 견해, 지침, 권고 및 우수 관행을 위원단과 위원회에 전달하고, 외부에 공표해야 한다.

위원단은 유럽정보보호위원회가 공표한 의견, 지침, 권고 및 우수 관행에 따라 취한 활동을 유럽정보보호위원회에게 통지해야 한다(제66조).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에 의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제67조).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선출해야 한다. 부위원장 1명은 그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으면 유럽정보보호 감독관으로 활동해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제68조). 위원장은 다음 업무를 맡아야 한다. (a) 유럽정보보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사 일정을 준비한다. (b)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가 적시에 수행됨을 보장한다(제69조).

13. 구제수단

(1) 이의권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가 본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 모든 정보주체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인 구제 수단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회원국의 감독기관에 이의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정보 처리의 결과로 인해 본 규칙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각자가 지닌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회원국 법률에 따라 적절히 설립된 기구, 기관 또는 단체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회원국의 감독기관에 이의을 제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기구, 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주체의 불만과 관계 없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국의 독립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73조).

(2) 사법적 구제수단

각 자연인 또는 법인은 각자에 관한 감독기관의 결정에 대해 사법 구제권을 가져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또는 감독기관이 이의의 경과 또는 결과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각 정보주체는 감독기관에게 불만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사법 구제권을 가져야 한다.

감독기관에 대한 법적 절차는 감독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의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정보주체가 평소 상주하는 회원국보다 다른 회원국에 소재한 감독기관의 결정에 의해 관여되는 경우 정보주체는 그가 상주하는 회원국의 감독기관에게 그를 대신하여 다른 회원국에 소재한 관할 감독기관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회원국은 본조에서 언급된 법원이 내린 최종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74조).

(3) 손해배상권

불법적인 처리 작업 또는 본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발생된 피해에 대해 관리자 또는 처리자로부터 배상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1명 이상의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법적 절차에 관련되는 경우 각 관리자 또는 처리자는 전체 피해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자신들이 피해가 유발된 사건에 대해 책임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관리자 또는 처리자는 상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제77조).

(4) 형사처벌

회원국은 본 규칙 조항의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 원칙을 규정하고, 관리자가 대리인을 지명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처벌 원칙이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정된 처벌은 효과적이고, 균형감 있고,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제78조).

(5) 행정제재수단

각 감독기관에게는 본조에 따라 행정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행정 제재는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효과적이고, 균형감 있고,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 벌금의 액수는 위반 행위의 성질, 중대성 및 기간, 위반 행위의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성질, 자연인 또는 법인의 책임 정도와 그가 이전에 저지른 위반 정도, 제23조에 따른 기술적, 조직적 조치와 절차, 위반 사항을 구제하기 위한 감독기관과의 협력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처음으로 의도치 않게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전제로 서면 경고가 전달될 수 있으며, 제재는 부과되지 않는다. (a) 자연인이 영리적 이익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b) 250명 이하의 인원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주요 활동에 부수하는 활동만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감독기관은 의도적이거나 부주의하게 다음과 같이 이행한 자에게 최고 250,000유로 또는 기업의 경우 세계 연간 매출액의 0.5%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a) 정보주체에 의한 청구 절차를 제공하지 않거나, 즉시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요구된 서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b) 12조 (4)를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요청한 정보 또는 회신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감독기관은 의도적이거나 부주의하게 다음과 같이 이행한 자에게 최고 500,000유로 또는 기업의 경우 세계 연간 매출액의 1%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제79조).

14. 기타 영역의 정보처리

(1) 건강 관련 정보의 처리

본 규칙의 범위 내에서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는 연합법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해 필요로 해야 한다. (a) 예방 의학, 직업병 의학, 의학적 진단, 간호 제공, 치료 제공, 또는 보건 의료 관리의 목적. 상기 정보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의료 종사자에 의해 처리되거나 회원국 법률에 따른 동등한 비밀유지 의무 또는 국내 관할 기구에 의해 제정된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여야 한다. (b) 공중 보건 분야에 대한 공익상의 사유(예: 건강에 대한 심각한 국가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특히 의료 제품 내지 의료 도구에 대한 높은 품질 및 안전 수준을 보장함) (c) 건강 보험 시스템의 보험금과 서비스에 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는 절차의 품질 및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들(예: 사회 보호)에 대한 공익상의 기타 사유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예: 진단을 개선하고, 유사한 유형의 질환을 구별하고, 치료 연구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환자 기록)에는 제83조에서 언급된 조건과 안전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제81조).

(2)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연구 목적의 정보

본 규칙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해 처리될 수 있다. (a) 상기

목적은 정보주체의 신원 확인을 현재 또는 앞으로 허가하지 않는 정보의 처리에 의해 별도로 완수되지 못한다. (b) 확인되었거나 확인 가능한 정보주체를 상대로 정보 귀속(歸屬)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는 이 방법으로 상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동안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공표 또는 공공연하게 공개할 수 있다. (a) 정보주체가 제7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허가하였다. (b) 정보주체의 이익,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가 상기 이익에 우선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결과를 나타내거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c) 정보주체가 정보를 공표했다.

위원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언급된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 및 요건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정보 및 접근 권한에 대한 필수적인 제한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상기 조건 하에서 정보주체의 권한에 대한 조건 및 안전 조치를 상술하기 위해 제86조에 따라 위임 법률을 채택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제83조).

(3)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 보호권을 비밀 유지 의무와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적합한 경우 본 규칙의 범위 내에서 회원국은 국내법 또는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내지 기타 동등한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 국내 관할 기구가 정한 원칙의 적용 대상인 관리자 또는 처리자에 관하여 제53조 (2)에 규정된 감독기관의 조사 권한을 설정하기 위해 특정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 상기 원칙은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활동을 통해 관리자 또는 처리자가 수령하였거나 획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제84조).

(4) 종교에 관한 정보

회원국에서 본 규칙이 발효되는 때에 교회와 종교 단체 혹은 공동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원칙은 본 규칙 조항과 일치할 것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종합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교회와 종교 단체는 본 규칙에 따른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설립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제85조).

15. 규칙의 적용범위

이 규칙안은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의도인 개인정보의 자동화 이외의 수단에 의한 처리에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 등에 의한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수기 등에 의한 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⁶⁷⁾

이 규칙안은 (a) 유럽연합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 특히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활동 중의 개인정보의 처리, (b) 유럽연합의 기관, 기구, 사무소와 정부기관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c) 유럽연합조약(TEU) 제2장의 범위 내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회원국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d) 전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활동 중에 영리목적 없이 자연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e) 범죄의 예방, 조사, 수사나 소추 또는 형벌의 집행 목적으로 행하는 권한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칙안은 유럽연합에서의 관리자나 처리자의 사업체 활동 중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처리활동이 유럽연합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정보주체에의 제공이나 그들 활동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67) 앞의 글, 11면.

경우에 유럽연합에 설치되지 않은 관리자에 의한 유럽연합에서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유럽연합 역내는 아니지만, 회원국의 국내법이 국제공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된 관리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한다.⁶⁸⁾

16. 관련규정과의 관계

2012년 규칙에 따르면 1995년 지침은 폐지된다. 1995년 지침에 대한 관련규정은 이 규칙으로 대체된다. 마찬가지로 지침 2002/58/EC 제1조 제2항⁶⁵⁾은 폐지되고, 2012년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명실상부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할 것이 예상된다.⁶⁹⁾

III.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의 특징

1. 감독기구의 일원화

1995년 지침에 따를 경우 유럽 기업들이 회원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경우 국가마다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승인, 허가, 감독 등을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했다. 이는 지침의 성격상 당연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으나 2012년 규칙에 따를 경우 어느 한 회원국에서 승인, 허가, 감독 등을 받으면 전체 유럽연합에서 다시 승인, 허가, 감독 등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⁷⁰⁾ 다만,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 회원국의 규제를 받는다.⁷¹⁾

68) 함인선, 앞의 글, 11면.

69) 함인선, 앞의 글, 22면.

70) 이창범,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동향 및 시사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3년 제6호, 2013, 86면.

71) European Commission, “How will the EU's data protection reform strengthen the internal market?”, 2012.1.25.

2. 개인정보처리 등록제도 폐지

그동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 활동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비용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2012년 규칙에서는 이와 같은 통지 의무가 폐지되었다.⁷²⁾

3. 동의 방법의 엄격화 및 동의의 입증책임 신설

현행법 하에서는 동의를 받을 때 “모호하지 않게(unambiguously)”만 받으면 되나, 2012년 규칙은 “명시적인(explicit)” 방법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여 동의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⁷³⁾

4. 아동의 권리보호 강화

1995년 지침은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규제도 하지 않았으나 2012년 규칙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⁷⁴⁾

5. 개인정보 침해 통지 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가능한 24시간 이내에 감독기관에게 침해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후 정보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72) 이창범, 앞의 글, 86면.

73) 이창범, 앞의 글, 87면.

74) 앞의 글, 88면.

6. 잊혀질 권리의 도입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강조하는 미국이 ‘잊혀질 권리’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중시하는 유럽의 각국과 EU는 ‘잊혀질 권리’의 인정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에 공표된 ‘개인정보에 관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유럽위원회 보고서이다.⁷⁵⁾

2010년 6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 긴요해진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⁷⁶⁾ 그 결과물이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이고, 동 규칙은 잊혀질 권리 및 삭제권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써 개인은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정보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관리자는 ①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경우, ②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 ③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경우, ④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EU법이나 회원국 법에 의해 정보를 보유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에는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다.

75) 박진우, “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 *세계헌법연구* 20권 2호, 2014, 158면.

76) 앞의 글, 161면.

제 5 장 결 론

I. 빅데이터 시대의 대비 필요성

빅데이터에 기반한 각종 정보의 분석은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빅데이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빅데이터가 ICT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글로벌 기업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및 ‘활용’에 주력하고 있는 형국이다.⁷⁷⁾

한국도 빅데이터를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의 신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래사회의 가치를 창출해줄 원천으로 보고 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을 넘어서 대규모 데이터의 적극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보재화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차세대 ICT산업의 주력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3년 10월에 빅데이터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빅데이터를 창조경제 및 정부3.0의 핵심동력(growth-engine)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빅데이터의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⁷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공유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⁷⁹⁾

77) 상세한 내용은 송영조, 선진국의 데이터기반 국가미래전략 추진현황과 시사점, IT & Future Strategy 제2호, 2012, IT & Future Strategy.; 배동민/박현수/오기환, “빅데이터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5권 10호, 2013. ; 빅데이터전략연구센터, “新가치창출을 위한 주요국의 빅데이터 추진 전략 분석”, IT & Future Strategy 제11호, 2012.

78) 정부부처합동,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 2012. 11. 28.

79) 이상환/성원경/박성우, 빅데이터, 과학기술의 새로운 미래, KOFST Issue Paper 2012. 3, 1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의 이동과 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이동은 비즈니스와 과학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공공분야와 예술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점을 예측하고 분석해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효용가치가 높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종국에는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과 사회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⁸⁰⁾

현재의 기술발전 속도에 따르면, 빅데이터에 대한 고급분석기술은 향후 2-5년내에 성숙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한다.⁸¹⁾ 즉,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재는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최근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KT가 공동 추진한 ‘빅데이터를 통한 심야버스 노선 정책 지원’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공개한 교통 데이터와 KT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 데이터를 결합해 가장 최적화된 심야버스 노선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의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KT 기지국이 보유한 통화량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노선을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이자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이다.⁸²⁾ 버스노선 개편과정에서

80) 박순서, 빅데이터,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 RSG, 2012, 9면.

81) 한국정보화진흥원(편),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3면.

82)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주요 인구 밀집지역의 심야버스 노선을 개편하여 시

발생하게 마련인 시민들의 반발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득했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든 빅데이터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할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관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식중독 예측지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과거의 식중독 발생 지역, 학교, 요일, 원인 물질,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보하는 시스템이다.⁸³⁾ 또한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SMS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고, 관련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의 세태를 반영하듯이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 중 몇 종류는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⁸⁴⁾

따라서 유럽연합의 ‘데이터 개방전략(ODS: Open Data Strategy)’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만하다. 또한 유럽연합은 2013년 공공데이터 재사용에 관한 지침(Directive 2013/37/EU)으로 기존의 지침을 개정했고, 이에 의하면 ‘EU 데이터 포털’에 유럽연합 내 공공기관 및 27개 회원국의 부처 등은 각종 데이터를 게재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개인과 기업은 공공데이터를 얼마든지 재가공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건대입구 지역의 심야버스 노선 개편이 있었다.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변화가 지역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83) 식중독 예측지도는 부산식약청과 미래창조과학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과 함께 지난 12년간(2002~2013) 부산·울산·경남지역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또 식중독 발생원인 파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청 데이터, 기상 변수(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강수량, 습도), 지리·지역적 변수를 반영한 빅데이터 패턴 분석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84) <http://www.ciokorea.com/slideshow/21859>

III.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

유럽연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12년을 기점으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2년 1월 ‘개인정보보호지침(1995)’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규칙”을 발표했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기준에는 유럽위원회 데이터보호지침에 근거하여 회원국이 각각 국내법화하는 방식이었다면, 2012년 이후에는 지침이 아니라 규칙으로 격상하여 유럽연합전역에 통일법령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연합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엄격한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실시하며, 자율적인 규제보다는 개인정보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과거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규칙이 특별히 예상 못할 수준의 규범은 아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2012년 규칙에 따라 “프로파일링되지 않을 권리”를 창설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하고 있다. 즉, 2012년 규칙은 정보주체의 본인측면의 평가, 본인의 업적, 경제상황, 위치, 건강, 개인적 지향, 신뢰성, 행동 등에 대한 “프로파일링되지 않을 권리”를 창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자녀 개인데이터의 처리에 친권자의 동의취득을 의무로 부여하고 있고, “잊혀질 권리”的 창설에 의하여 SNS사업자 등의 개인데이터관리자에 대해 제3자에로의 데이터의 링크나 해당 데이터의 복제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빅데이터의 장점만을 강조하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을 경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강화 등의 일련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각종 정보의 분석은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각국은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환경조성을 위한 무분별한 데이터 개방과 공유 정책은 자칫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개인정보보호가 빅데이터 환경 조성의 장애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 방향으로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 공공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데이터 활용기술 개발 측면에서 뒤쳐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를 감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개인정보와 감시보다는 새로운 정책 및 서비스 개발 중심의 활용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⁸⁵⁾

즉, 국가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반면에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⁸⁶⁾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활용’이라는 두 개의 상충할 수 있는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인정보등급제 등을 체계화하는 제도 마련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등급에 따라 옵트아웃(opt-out)과 옵트 인(Opt-in)을 다르게 규정하는 방식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85) 송영조, 선진국의 데이터기반 국가미래전략 추진현황과 시사점, IT & Future Strategy 제2호(2012.4.6).

86)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IV.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비롯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가칭 ‘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이나 기관이 저장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⁸⁷⁾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는 결국 공공부문에서의 데이터 활용일텐데, 공공의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공공데이터라는 공적 영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간의 조화를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위해 선진국의 법제에 관한 연구는 유의미한 지혜를 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바탕한 새로운 입법을 통해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87) 박원준, ‘빅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방송통신전파저널 통권 51호, 2012, 43면.

참 고 문 헌

김용훈,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4.

김일환/홍석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4권 제4호, 2012

김한나, “빅데이터의 동향 및 시사점”, 방송통신정책, 제24권 19호, 2012.

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 연구 제21권 제2호, 2013.

송영조, 선진국의 데이터기반 국가미래전략 추진현황과 시사점, IT & Future Strategy 제2호, 2012, IT & Future Strategy.

신영진,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추진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3권 제3호, 2012.

박덕영 외, EU법 강의, 박영사, 2013

박순서, 「빅데이터,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 RSG, 2012.

박진우, “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 세계헌법연구 20 권 2호, 2014.

배동민/박현수/오기환, “빅데이터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연구, 제25권 10호, 2013.

배성훈 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6권 제3호, 2013.

참 고 문 헌

- 빅데이터전략연구센터, “新가치창출을 위한 주요국의 빅데이터 추진 전략 분석”, IT & Future Strategy 제11호, 2012.
- 박원준, “‘빅데이터(Big Data)’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방송통신 전파저널 통권 51호, 2012.
- 이상환/성원경/박성욱, “빅데이터, 과학기술의 새로운 미래”, KOFST Issue Paper 2012년 3월호, 2012.
- 이재식,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3월호, 2013.
- 이창범, “빅데이터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EU,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2012년 11월호, 2012.
- _____,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동향 및 시사점”, 최신외국 법제정보, 2013년 제6호, 2013.
- 정부부처합동,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 2012. 11. 28.
- 조소영, “정보주권의 의미와 내용”, 한국언론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정보주권과 데이터 국지화’, 2014. 11. 14.
- 한국정보화진흥원(편),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 한국정보화진흥원, IT Issues Weekly, 2013. 6. 20.
- 함인선,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33호, 2012.

Mark A. Beyer/Douglas Laney, The Importance of ‘Big Data’: A Definition,
Gartner, 2012, 6.

McKinsey Global Institute,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2011.6.

NEM, “Big and Open data Position Paper”, NETWORKED & ELECTRONIC
MEDIA, 2013.12.

<https://ec.europa.eu/digital-agenda/en/making-big-data-work-europe-0>

<http://www.big-project.eu/>

<http://www.epsiplatform.eu/>

<http://www.ciokorea.com/slideshow/21859>